

자 체 통 제 산업국시량과 전화번호 근거서류접수일자
기안처

다임 직관국장 산업국 부국장 직관

관계관
서명
기안일
년월일
분류기
경수합
제

1303

1966년산 하복 제3차 수당 강조별 의사결정
1966년산 하복을 수당하기 위하여 1966년산
하복 수당 요강 제3항에 의거 직관에게 즉시
시고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별 의사를 관보하여
합니다.

“관보안” 1303
사실특별이 상고 재

1966년산 하복 수당 요강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복수당 강조별 의사
를 지정하니 각각부서는 이기라내에 따림
있이 수당하기 바랍니다.

1303

분류기호	1133.32	기안용지	현결규정 5 조 1항
문서번호	-1901	(전파번호 416)	국장 권결사항
차의기호	간안부	재	재
시행일자	기안작성일	결	산량국장
보존년한	기안작성년	결	결
보조기관	과장	계장	
별도	상고재심	상고재심	상고재심
경수합	내무부	재	재

1303

1303

5-2, 198

1966. 8.

수업특별시간		김 권 옥
구분	수업 장소	수업 일자
방 내 한	방, 출강소	8. 8
안 방	전원동원강소	8. 9
"	송와 출강소	8. 10
"	북동동원강소	8. 11
"	연수 출강소	8. 12
안 방	노하 "	8. 13
안 방	산동 "	8. 12
"	관악 "	8. 13
"	북 "	8. 8
"	가양동원강소	8. 9
"	연동 출강소	8. 10
"	삼평 참미소	8. 11

김 권 옥

안.



수신처 참조

시정

제목: 1966년산 타목수양비 다른 세3차
수양장소별 일차 보고.

1. 제록되는 김마로 타목비 ~~1966~~년산
타목수양 실적이 극히 부족하여 앞으로 타목
수양 일부에 지장이 막대할것으로 예상되는바

2. 다음과 같이 세3차 수양장소별 일차
보고를 하여 구청 및 읍장소 서기관이 선의이용
을 제청 하고

3. 1966년산 타목수양이 오장내 타목비
세3차 수양기대내에 목표량 전량 확보
할수있도록 하여 지원과 PR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다

4. 타목수양 일부에 전력을 전수 할것은
물론 김마로 타목 수양 일부의 지원과 함을 주다
하여 세3차 수양기대에는 각별한 노력으로
수기내 성과를 거양하도록 함것이며 수양비 기타
사안에 있어서도 차질 없도록 기뻐할것.

첨부: ~~1부~~ 1부 등.

수신처 시정 3. 4. 5. 3.

5-4

200

안 2.

수신처 함포

시 강

제목: 동 건

1966년산 함포수행에 따른 세브차 수행
장소별 분자를 별지와 같이 영보 하였으나
함포수행각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함포분 1부 3
수신처: 서울동행, 동행수행함포장
~~이전함포~~ 함포기, 함포지령장

안 3.

수신처 함포

양정파강

제목: 동 건

1966년산 함포수행에 따른 세브차 수행
장소별 분자를 별지와 같이 영보 하였으나
각부수행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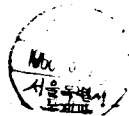
첨부: 함포분 1부 3
수신처: 동행파강, 세정파강

안 4.

양보실강

양정파강

제목: 동 건



193

1966년산 하크 수확에 따른 세브라 수확.
장도 별 의라를 열거하여 같이 공인 하겠으나
P.R 에 관리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부 김영문 212 3

김영문

201